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 방안

2023. 6.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목 차]

1. 검토 배경 및 현행 사무분담 기간
 - 가. 검토 배경
 - 나. 현행 사무분담 기간
 - 다. 외국 법원의 사무분담 기간
2. 사무분담 장기화 필요성
 - 가. 현황
 - 나. 사무분담 장기화의 필요성
3. 사무분담 장기화 기본원칙의 설정 및 시행방안
 - 가. 사무분담 장기화 기본원칙의 설정
 - 나. 사무분담 장기화 원칙에 대한 예외
 - 다. 사무분담 장기화 원칙의 시행
4.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인식 및 분석
 - 가. 설문조사 실시 개요
 - 나. 설문조사 결과
 - 다. 설문조사 내용의 분석
5. 사무분담 장기화 부작용 최소화 방안 검토
 - 가.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개관
 - 나. 법관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극복 방안
 - 다. 그 밖에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
6. 사무분담예규 개정안 검토
 - 가.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따른 예규 개정 방향 검토
 - 나.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선언에 관한 예규 개정규정 검토
 - 다. 종전 사무분담을 고려하는 내용의 예규 개정규정 검토
 - 라. 사무분담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실질화에 관한 예규 개정규정 검토



1. 검토 배경 및 현행 사무분담 기간

가. 검토 배경

▣ 사실심 충실화 및 법관 전문화의 필요성

-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민사 분쟁의 복잡다기화 양상에 발맞추어 보다 신속·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 필요
- 형사사건의 복잡·다양화, 새로운 증거방법의 등장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따라 법관이 형사재판에 관한 충분한 업무지식과 정보,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사실심 재판의 근간이 되는 1심 및 항소심 재판장이 분쟁해결 전문가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고양에 필요한 근무기간 확보 필요

▣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최근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는 사법부 신뢰 저하로 연결될 우려 있음
-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 전후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사이에 업무처리에 심한 편차 발생
- 사무분담 변경 횟수를 줄여 사건처리가 연중 고르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사건처리의 균질성도 함께 도모할 필요

나. 현행 사무분담 기간

▣ 최소 사무분담 기간

- 본안 재판부
 - 원칙: 재판장 2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
 - 예외



민사소액, 형사 정식재판	전문법관 ¹⁾	전문재판부에 배치된 법관	고법판사
1년	전문법관 보임 기간	2년	3년(형사는 2년)

● 비분안 재판부

영장전담	조정전담	기타
6개월 이상	2년	제한 없음

■ 관련 규정

● 현행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사무분담예규’)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장인 법관: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
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무분담예규의 연혁

- ① 인사제도개편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무분담 2년 원칙 설정(1998년)

▣ 업무처리능률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함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재일 81-4 ; 1998. 3. 1. 시행)

제4조 (사무분담의 결정)

(3)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함에 있어, 각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최소 2년간 변경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 또는 지원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이러한 사무분담의 고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단독부장과 재판장이 아닌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을 단축함(2000년)

1)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 기간 내에 사무분담을 변경하였을 경우 보고 조항 신설
- 이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임 ; 예외 신설의 근거는 찾지 못함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81-4 ; 2000. 1. 1 시행)

제4조 (사무분담의 결정)

(3)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함에 있어,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최소한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내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 또는 지원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이러한 사무분담의 고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장인 법관 2년

다만, 부장판사가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1년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

(4) 재판장인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전항 제1호의 기간 내에 변경한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되,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한다.

- ③ 정식재판 전담 및 소액 판사의 사무분담 기간 1년으로 단축(2006년)

- 업무 연속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당 재판업무의 특성을 고려함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 2006. 1. 1 시행)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장인 법관 :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와 부장판사가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각 1년)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 1년

- ④ 단독부장의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함(2014년)

- 합의부장 순환근무제 실시에 따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2014. 2. 24. 시행)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장인 법관 :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 1년

●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7. **전문재판부**의 운영

나. 사무분담의 기간

전문재판부에 배치된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은, 다른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예 : 영장전담법관) 또는 전담 사건(예 : 4. 가.항 또는 다.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특성, 법관의 인사이동이나 사무분담상의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의 경우는 해당기간)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2. **고등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가. 고등법원장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관의 사무분담을 확정하는 경우 고등법원 판사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고등법원 판사 개인이나 법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민사, 가사, 행정 합의부: 3년**
- 2) **형사 합의부: 2년**

● 민사 및 가사조정외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조정담당판사의 지정 및 사무분담 등)

③ 법원장은 조정담당판사로 지정된 법관의 조정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2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개인이나 법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영장전담판사의 지정)

③ **영장전담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 외국 법원의 사무분담 기간



1) 미국

■ 연방법원

- 법관이 특정 사무분담을 맡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수되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함(General Jurisdiction)
⇒ 사무분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건배당의 문제가 발생할 뿐임

■ 뉴욕주

- 민사법원(Supreme Court, Civil Branch, New York County)
 - 정기적인 사무분담 변경이 존재하지 않고, 임기(14년) 동안 동일한 종류의 사무분담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특정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판사가 퇴직하는 경우 후임 판사가 전임 판사의 사무분담을 이어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별히 사무분담을 새로 정할 필요가 없음. 정하는 경우에도 판사 개개인의 희망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며,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사무분담을 결정함
 - (참고) 주 법원행정처장이 사무분담권한을 행사하고, 판사 개개인의 희망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니며,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사무분담을 결정함
- 형사법원(Supreme Court, Criminal Branch, Kings County)
 - 정기적인 사무분담 변경은 없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님
 - (참고) 법원장이 사무분담의 전권을 행사하고, 판사들의 희망, 전문분야 등을 반영하기도 하나, 그와 무관하게 임의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음

■ D.C.(Superior Court of District of Columbia)

- 사무분담 기간의 결정은 법원장의 재량판단 사항임. 보통 민사, 형사의 경우 2년, 가사의 경우 3년 만에 사무분담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잔



류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처럼 대대적인 사무분담 변경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실제로 대략적인 사무분담 주기는 약 3년 내지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임
- (참고) 사무분담 결정은 법원장의 전적인 권한임. 판사의 희망을 묻기도 하나 이는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법원의 사정에 따라 판사들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

▣ 캘리포니아주(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 매년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경력이 짧은 법관들을 위주로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사무분담을 찾은 이후에는 더 이상의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 매년 11월에 법관들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에 타법원으로의 진출 희망 여부, 진출 불희망 시 사무분담 변경 희망 여부, 변경 희망 시 1, 2, 3순위를 조사함
 - 법원장이 법관 경력(seniority),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 ▣ 실무상 법관 경력이 높은 법관의 희망 의사를 우선하여 반영하고, 통상적으로 법관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나 최종적인 사무분담의 확정은 법원장이 행사함
 - 신입 법관들은 임관 후 몇 년 동안은 여러 사무분담을 거치게 되고, 연차가 된 이후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사무분담을 계속 하게 됨
- 수시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함
 - 소속 판사의 사직, 해당 판사의 불성실, 법관 또는 법원별 업무 부하의 불균형 등

2) 독일



- ▣ 근무를 원하는 법원의 희망하는 재판부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임용이 이루어지고, 판사가 원하지 않는 한 전보인사나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정기적인 전보인사가 없기 때문에 판사의 퇴직 또는 승진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석으로의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질 뿐, 정기적인 사무분담 변경이 없음. 이와 같이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임.

3) 일본

▣ 관련 규정

-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및 가정재판소에서의 재판사무의 분배, 재판관의 배치 및 재판관에 장애가 있을 경우의 대리순서에 대하여는 매년 미리 당해 재판소의 재판관회의의 의사로 정함(하급재판소사무규칙 제6조 제1항)
- 재판소의 각 부 또는 지부(지원)의 재판관에 대한 재판사무의 분배는 당해 부 또는 당해 지부에서 정함(하급재판소사무규칙 제6조 제2항)
- 위와 같이 정하여진 사무의 분배, 재판관의 배치 및 재판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의 대리순서는 하나의 부의 사무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재판관이 퇴관, 전관 또는 전근한 경우, 그 밖에 장기간에 걸친 결근 등으로 인하여 재판관에게 계속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연도(매년 1. 1. ~ 12. 31.)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음(하급재판소사무규칙 제7조)

▣ 실제 사무분담 기간

- 사무분담은 각 지방재판소가 매년 12월에 재판관회의에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 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무분담의 변경이 없음 → 사실상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 판사보: 최고법원 규칙, 내규 등 일반화된 규정은 없으나 인사 관행은



다음과 같음

연차	법원	사무분담	직위	비고
1~3	대형 ²⁾	동일, 드물게 2년 + 1년	배석	외부기관 파견, 유학 1~2년
4~5	중형 ³⁾	동일, 아주 드물게 1년 + 1년		
6~7	소형 ⁴⁾	통상 여러 가지 겸임 인사 수급 따라 연중 변동도 발생	배석 겸 ⁵⁾ 단독	
8~10	대형, 중형 ⁶⁾	동일, 드물게 2년 + 1년		

● 판사

- 최고법원 규칙, 내규 등 일반화된 규정은 없으나, 원칙상 3년마다 이동, 예외적으로 4, 5년 만에 이동, 인사 관행은 아래 표와 같음
- 한 근무지에서는 한 사무만 담당, 정년퇴임 등에 따른 부정기 인사이동만 예외
- 도쿄지법 부장의 경우 25년차 전후에 되는데(빠르면 22년차), 재판의 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3년은 기본이고, 5년까지 재판장 연임을 권장하는 분위기임

연차	소속, 직위	비고
11~15	지방법원 배석	
16~20	고등법원 배석 / 지원 부장	둘 사이 우열, 순서 없음
21~30	고등법원 배석 / 지방법원 부장	둘 사이 우열, 순서 없음 도쿄지법 부장은 경력 25년 전후 임명
31~35	지방법원장 → 고등법원 부장	다수는 지방법원장 거쳐 고등법원 부장 임명
36~	고등법원장 → 최고법관	대부분 고등법원장 거쳐 최고법관 임명 최고법관은 전원 60세 이상, 정년 70세

4) 시사점

- 2) 법관 60~100명 이상인 지방법원으로서, ① 도쿄, 오사카 등 대규모 경제권역의 중심, 위성도시 소재 지방법원, ②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등 비교적 큰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해당됨
- 3) 바로 앞 주에 해당하지 못한 지방법원을 말함
- 4) 지원을 말함
- 5) 한 재판부에서 합의체의 구성원이자, 단독재판장으로 활동하며, 둘 중 하나만 담당하는 경우는 없음
- 6) 이 기간 최고법원 사무총국 근무가 가능한데, 그럴 경우 최고법원 2년, 도쿄, 오사카지방법원 2년 근무가 관행임



- ▣ 미국, 독일의 경우 대체로 우리 법원과 같은 잦은 정기적 전보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적 내지 잦은 사무분담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일본의 경우 정기적 전보인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사실상 사무분담 변경이 없음
- ▣ 우리 법원의 경우 대규모 정기적 전보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내에도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⁷⁾ 필요성

가. 현황

1)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 변경 실태(민사, 형사)

▣ 합의재판부

● 합의부장

	소속 법원 잔류		전출, 사직 등 (c)	합계 (a+b+c)	변경률 (b+c)/합계
	사무분담 유지(a)	사무분담 변경(b)			
2020→2021년	26	9 ⁸⁾	17	52	50%
2021→2022년 9)	23	6 ¹⁰⁾	22	51	55%

- 재판장이 변경되는 합의재판부가 매년 50 ~ 55% 정도임 → 전출, 사직 외에 2년간 합의부장 근무 후 잔여 근무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도 사무분

7) 이하 '사무분담 장기화'라고 함.

8) 민사합의부 재판장은 7명,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2명임.

9) 법관의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관한 내규 개정으로 민사 1심 합의부 재판장은 3년 근무 원칙으로 변경

10) 민사 1심 합의부 재판장의 근무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민사합의부 재판장은 1명에 불과하나,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5명임



답이 변경된 경우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음

● 배석판사

	사무분담 유지	사무분담 변경	합계	변경률
2020→2021년	8	97	105	92%
2021→2022년	13	91	104	87%

- 배석판사의 사무분담은 주로 1년마다 변경 → 전문법관, 기존 재판부 잔류 희망자 일부 등을 제외한 배석판사 거의 전원의 사무분담이 변경되고 있음

● 합의부 전체

	전원 변경	2명 변경	1명 변경	0명 변경	합계
2020→2021년	21개 (40%)	29개 (56%)	1개 (2%)	1개 (2%)	52개
2021→2022년	22개 (43%)	22개 (43%)	6개 (12%)	1개 (2%)	51개

- 매년 85% 이상의 재판부에서 구성원 2명 이상이 변경되고 있고, 매년 40% 이상의 재판부에서 구성원 전원이 변경되고 있음

■ 경력대등재판부

	소속법원 잔류		전출, 퇴직 등(c)	합계	변경률 (b+c)/(a+b+c)
	사무분담 유지(a)	사무분담 변경(b)			
2020→2021년	26명	8명	8명	42명	38%
2021→2022년	27명	11명	10명	48명	44%

- 경력대등재판부의 경우에도 매년 약 40% 내외로 재판장이 변경되고 있음

■ 단독재판부



		소속법원 잔류		전출, 사직, 비가동	합계	변경률 (1 - a/합계)
		사무분담 유지(a)	사무분담 변경			
2020→2021년	중액, 고액, 조정, 형단	41	12	51	104	61%
2021→2022년	중액, 고액, 조정, 형단	42	20	45	107	61%

- 단독재판장의 경우에는 매년 61% 내외로 재판장이 변경되고 있음
- 매년 사무분담이 거의 전부 변경되는 신청, 소액 재판부를 포함할 경우 재판장 변경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임

2) 전국법원의 실태

▣ 부장판사

● 2년 근무 원칙인 법원

- 해당 법원: 서울권 법원(서울중앙 제외), 경인권 법원¹¹⁾
- 재판장 2년 원칙(소액, 고정, 신청 단독 제외) → 인사주기와 사무분담 주기 합치 → 소속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하나의 사무분담 → 사실상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실현’
- 사직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매년 1/2의 재판장이 변경될 수 있음

● 3년 근무 원칙인 법원 ⇨ 재판장 변경률이 매우 높음

- 해당 법원: 서울중앙, 지방권 근무 경향교류 법관
- 인사주기와 사무분담 주기 불합치 → A합의부 또는 B단독 재판장 또는 C경력대등재판부 재판장 2년 근무, D 단독 또는 E경력대등재판부 재판장 또는 F합의부 재판장 1년 근무 후 전출 → 재판장 변경률 상승
- 사직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매년 2/3의 재판장이 변경될 수 있음

▣ 단독판사¹²⁾

11) 기존 2년 근무가 일반적이었으나, 2023. 2. 정기인사에서 서울권 진입이 예상되었던 법관들(주로 사법연수원 32기)이 경인권에 잔류하게 됨으로써 근무기간이 3년으로 되었음



● 2년 근무 원칙인 법원

- 해당 법원: 서울권 법원, 경인권 초임으로서 지방권 근무 후 경인권 근무 법관
- 민사 중액 및 형단(고정 제외) 재판장: 2년 원칙 준수
 - ▣ 인사주기와 사무분담 주기 합치 → 소속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하나의 사무분담 → 사실상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실현’
- 소액·고정·신청 단독 재판장은 주로 1년마다 변경

● 3 ~ 4년 근무 원칙인 법원: 재판장 변경률이 매우 높음

- 해당 법원: 서울권 내지 지방권 초임으로서 지방권 근무 후 경인권 근무 법관(3년), 지방권 법원(4년)
- 소액·고정·신청 단독 재판부, 배석판사, 본안 단독 재판부 등을 번갈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배석판사

- 배석판사의 사무분담은 주로 1년마다 변경 → 일부 예외를 제외한 배석판사 거의 전원의 사무분담이 변경되고 있음

나. 사무분담 장기화의 필요성

1) 업무처리능률의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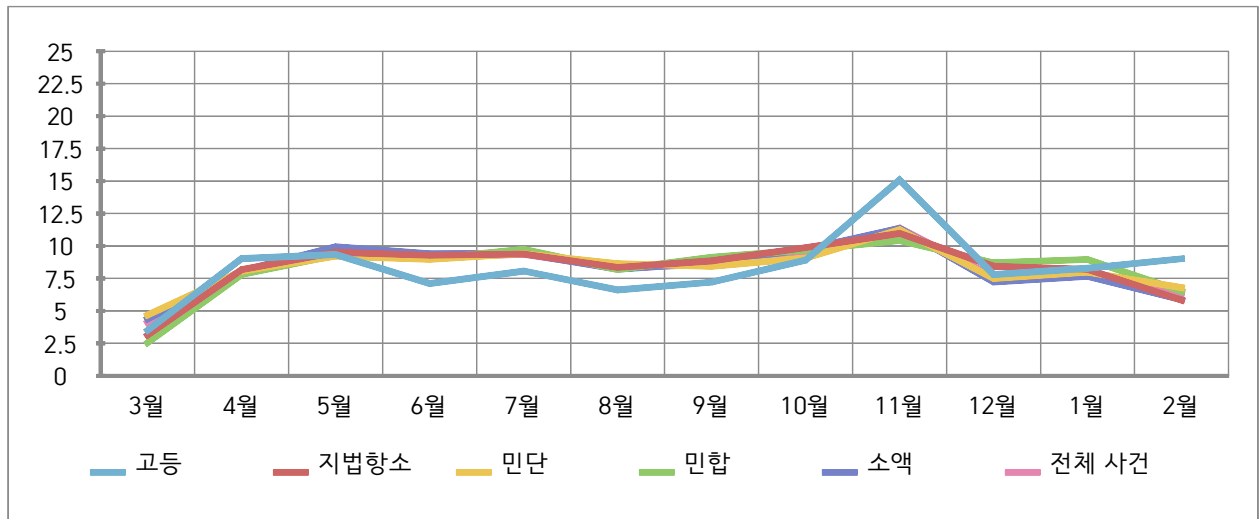
▣ 전국법원 민사사건 월별 사건처리비율(2018. 3. ~ 2023. 2. 실질사건 기준)

	고등	지법항소	민단	민합	소액	전체 사건	평균
3월	3.51%	3.13%	4.67%	2.55%	4.39%	4.11%	8.33%
4월	9.03%	8.18%	8.06%	7.80%	8.08%	8.11%	8.33%
5월	9.34%	9.52%	9.22%	9.28%	9.93%	9.56%	8.33%

12) 사무분담예규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초임판사는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초임 법관 제외



6월	7.11%	9.28%	8.98%	9.04%	9.39%	9.10%	8.33%
7월	8.07%	9.38%	9.41%	9.74%	9.42%	9.37%	8.33%
8월	6.61%	8.35%	8.64%	8.19%	8.22%	8.29%	8.33%
9월	7.21%	8.85%	8.43%	9.12%	8.70%	8.60%	8.33%
10월	8.91%	9.88%	9.07%	9.69%	9.75%	9.50%	8.33%
11월	15.09%	10.97%	11.26%	10.42%	11.36%	11.38%	8.33%
12월	7.80%	8.44%	7.50%	8.70%	7.23%	7.63%	8.33%
1월	8.29%	8.20%	7.98%	8.96%	7.66%	7.98%	8.33%
2월	9.02%	5.82%	6.79%	6.52%	5.87%	6.37%	8.3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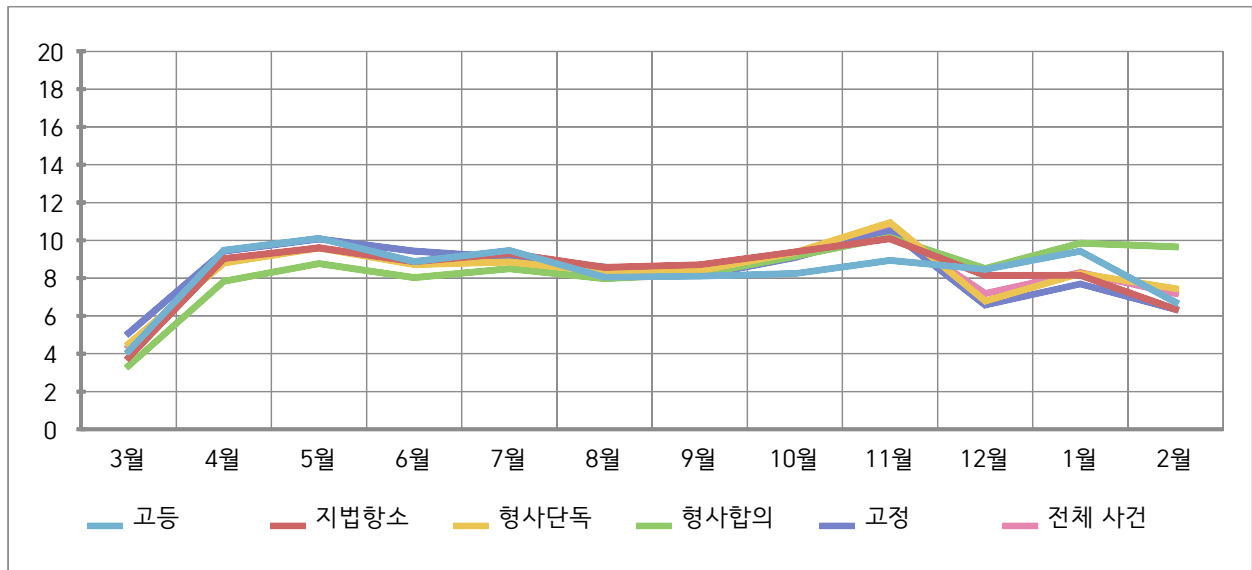


▣ 전국법원 형사사건 월별 사건처리비율(2018. 3. ~ 2023. 2. 실질사건 기준)

	고등	지법항소	형사단독	형사합의	정식재판 청구	전체 사건	평균
3월	4.14%	3.80%	4.52%	3.36%	5.09%	4.37%	8.33%
4월	9.48%	9.03%	8.80%	7.84%	9.43%	8.90%	8.33%
5월	10.11%	9.60%	9.59%	8.77%	10.07%	9.62%	8.33%
6월	8.87%	8.87%	8.72%	8.03%	9.43%	8.81%	8.33%
7월	9.47%	9.31%	8.85%	8.50%	9.10%	8.97%	8.33%



8월	8.05%	8.57%	8.35%	7.97%	8.58%	8.40%	8.33%
9월	8.10%	8.71%	8.39%	8.20%	8.12%	8.40%	8.33%
10월	8.24%	9.39%	9.35%	9.15%	9.08%	9.28%	8.33%
11월	8.94%	10.08%	10.93%	10.16%	10.49%	10.59%	8.33%
12월	8.46%	8.14%	6.79%	8.51%	6.58%	7.19%	8.33%
1월	9.42%	8.15%	8.25%	9.85%	7.69%	8.29%	8.33%
2월	6.72%	6.35%	7.45%	9.65%	6.34%	7.19%	8.3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검토

- 3월에 매우 낮은 처리율 → 4월부터 회복 → 휴정기가 있는 8월 약간 하락 → 9월 ~ 11월 상승 → 12월 ~ 1월 하락 → 2월에 낮은 처리율
- 사무분담 변경을 전후한 업무 처리율이 평균보다 낮음 ⇨ 잦은 사무분담 변경을 지양함으로써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업무처리 능력 제고 ⇨ 사법신뢰 회복
- 휴정기, 연휴 등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



편차가 줄어든다면, 최적의 효율, 최적의 업무 배분을 구현할 수 있음

2) 심리주체와 판결주체의 분리

■ 현황

- 잦은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변론절차 내지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하나,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 분석

- 심리기간이 장기화된 사건에 있어 심리주체와 판결주체가 분리되는 경우 판결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 사실심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사무분담이 변경된 경우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로서도 결론에 자신이 없거나 사건과약을 위해 불필요한 기일진행을 할 수밖에 없음
- 심지어는 변호사가 재판부의 심증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예단을 가지고 사무분담이 변경될 때까지 재판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음

3) 법관 전문화에 역행

■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에 따른 전문적인 분쟁해결 요청 증대

- 분쟁의 복잡·다양화, 새로운 증거방법의 등장,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등에 따른 법관의 전문성을 고양할 필요성 증대

■ “법관의 전문성은 법관의 처리 사건 수에 비례”

- 해당 분야 장기간 근무로 ① 해당 분야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통찰과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으로 전문성을 취득하고, ② 축적된 전문성이 개별 사건의 적정하고 효율적 처리에 기여함

▣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 사무분담 기간 중 첫 4개월은 업무정착기, 마지막 2개월은 업무이전기, 나머지 기간은 업무숙련기로 설정함
- 업무숙련기는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이 축적되고 업무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기
- 20년 근무하는 법관의 경우
 - 2년마다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10개의 재판부에서 근무) 전체 240개월 중 40개월은 업무정착기, 20개월은 업무이전기에 근무하고 180개월간 업무숙련기에 근무함
 - 3년마다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7개의 재판부에서 근무), 전체 240개월 중 28개월 업무정착기, 12개월 업무이전기에 근무하고, 200개월간 업무숙련기에 근무함
 - 4년마다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5개의 재판부에서 근무), 전체 240개월 중 20개월 업무정착기, 10개월 업무이전기에 근무하고, 210개월간 업무숙련기에 근무함

3. 사무분담 장기화 기본원칙의 설정 및 시행방안

가. 사무분담 장기화 기본원칙의 설정

▣ 『1 법원, 1 사무분담』 원칙 설정

- 재판장 변경률이 높은 3 ~ 4년 근무 원칙인 법원에서 소속 법원에 잔류하면서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사무분담 장기화의 실질적 효용을 높일 수 있음
- 사무분담의 기본원칙은 수도권과 지방 여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규모의



법원 및 지원 어디에서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을 간명하게 규율하는 것이 좋음

- 특히, 기존의 관행에 따른 사무분담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사무분담의 원칙이 복잡하다면 이를 곧바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 판사 임용 최소경력의 상향과 그 경력기간의 변동 가능성, 평생법관제의 정착 등 법원 안팎의 다양한 사정 변화로 인하여 기존 인사 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사무분담은 법관 전보인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무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두는 경우 인사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으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도입을 제안함. 이는 판사가 전보인사에 따라 근무하면서 한 법원에서는 한 사무분담만을 담당하는 것을 사무분담의 대원칙으로 한다는 것임
- 사무분담은 법원장과 지원장의 권한이므로 이와 같이 단순한 원칙을 선언하여 두더라도 법원장과 지원장이 여러 법원과 지원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특수 사정을 사무분담 권한 내에서의 재량으로 반영 가능(각급 법원의 사무분담 특성, 규모, 인력수급 사정 등을 존중할 필요)

■ 『1 법원, 1 사무분담』 원칙의 구체적 내용

- ① **본안 재판장(합의부 재판장, 단독 재판장)**에, ② **3년을 상한**으로, ③ **전체 재판부(형사 포함)**에 적용
- 장기화의 대상: ① **본안 재판장**, ③ **형사를 포함한 전체 재판부**
 - 종전에는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논의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단독/배석판사를 나누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 상당수가 합의부 재판장에 보임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변화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구별하여 원칙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경우의 예외를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사무분담 장기화의 목적이 업무처리능률의 제고, 심리주체와 판결주체의 분리 방지, 한 재판부에 오랜 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처리 지연 내지 방치 방지에 있고, 이러한 문제는 구속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처리의 결과에 따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경우¹³⁾ 등과 같이 형사재판의 경우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사무분담 장기화 원칙은 원칙적으로 **형사를 포함한 본안 재판부의 재판장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대등재판부**의 경우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재판장이므로 같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화의 기간: ② 3년을 한도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관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분담 기간은 인사 주기와 같은 기간이 될 것임
- 현재 인사는 대체로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서울/수도권 초임 경향교류 판사의 지방순환근무(4년),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지방순환근무(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3년), 일부 수도권 소재 법원의 근무(3~4년)가 이보다 장기의 주기로 이루어짐
- 향후 인사 패턴이나 인사 주기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법조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행의 인사 패턴이나 주기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앞서 본 예외적인 인사주기가 적용되는 경우나, 인사 주기의 장기화로 한 법원에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계속 한 사무분

13) 공직선거법 제264조, 제265조



담을 담당하게 할 것인지가 문제됨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이 심리 주체와 판결 주체의 분리를 방지하고, 사무분담 변경 무렵의 사건처리율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비선호 사무분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무분담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판사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담당 사무분담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도 있는 등 부작용도 예상됨
- 이에,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현재의 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한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기간을 3년을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사무분담 장기화 원칙에 대한 예외

▣ 원칙에 대한 예외의 설정

- **신청, 영장, 회생, 비송사건 등 본안이 아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업무처리의 연속성보다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무분담으로서 사무분담을 장기화할 필요가 크지 않고, 사무분담을 정하는 과정에서 1년 단위 근무 보직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예외로 설정하여 두는 것이 좋음
- **본안 재판부 중 민사소액사건, 형사정식재판청구사건 담당재판부:** 대체로 복잡하여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건보다는 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무분담으로서 사무분담을 장기화하여 얻을 실익이 크지 않고, 1년 단위 근무 보직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1법원, 1사무분담의 예외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배석판사:** 판사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가 크지 않고,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으로 신입법관이 부장판사 보임 전 경험할 수 있는 사무분담이 줄어들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연차 법관이 다양한 사무분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를 배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법원, 1사무분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원화의 정착으로 고등법원 판사들만을 대상으로 고등법원 사이에서만 예외적으로 전보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러한 전보인사는 지방 소재 고등법원까지 모두 이원화가 완성되면 없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또한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재판예규 제1714호) 제2조가 고등법원 판사는 원칙적으로 민사, 가사, 행정 합의부의 경우에는 3년, 형사 합의부의 경우에는 2년을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재 고등법원의 사무분담은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논의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장기근무법관:** 일반적인 인사 패턴에 따라 전보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법원에서 5년(서울권) 내지 최대 10년(지방권)까지 근무하므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기는 어려움. 각 장기근무법관의 근무기간에 따라 3년+2년(서울권), 3년+3년+1년(경인권 및 지방권) 등 별도의 사무분담 주기 설정 필요
- **한 법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앞서 본 것처럼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3년을 상한으로 하여 적용하는 이상, 한 법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1년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¹⁴⁾
-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해당 전문 분야의 특수성 등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전문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소규모 지원**
 - 가동법관 수, 사건 수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에 맡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서울/수도권 초임 경향교류 판사의 지방순환근무의 경우 대체로 배석판사로서의 근무가 대부분이고, 일부 수도권 소재 법원의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외적이어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사법정책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지원의 범위를 가동법관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여 두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소규모 지원의 경우 매년 인원 증감이 발생하는 점, 각 지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의 이유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하였음

● **형사재판부의 경우 구체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예외 설정의 필요**

- 사무분담 장기화는 직접 재판을 맡는 판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심리주체와 판결주체의 분리 방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처리 지연 내지 방치 방지, 재판부 변경 시기의 사건처리율 제고 등 국민을 위한 충실한 재판의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수범자는 판사들이므로 비선호 사무분담의 경우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여 일정 기간 그 사무분담을 담당할 후에는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새로운 사무분담 원칙의 초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형사재판부의 경우 공판중심주의의 정착 등으로 인한 기일의 증가, 디지털 증거의 등장으로 인한 증거기록의 양적 증가 및 이로 인한 기록 분량 증가, 형사재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부담 등 많은 판사들이 형사재판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함
-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고정하는 경우 형사재판장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판사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음
-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원칙적 사무분담 담당 기간인 3년을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간 형사재판을 담당할 후 건강 문제, 육아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법원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설정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 사무분담 장기화 원칙의 시행

▣ 사무분담예규 개정 및 시행

- 새로운 사무분담 원칙의 시행을 위하여 사무분담예규를 개정하여,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내용으로 사무분담예규가 개정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기인사에서 전입하는 법관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4.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인식 및 분석

가. 설문조사 실시 개요

1) 실시 목적

▣ 법관 대상 설문조사의 목적

- 법관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절차
 - 사무분담 장기화는 법관의 인사와 재판업무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따라서 대상자인 법관에 대하여 사전적·포괄적·전체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동시에 개개의 법관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법정책분과위원회 25차 회의에서도 지적된바 있음. 사무분담 장기화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방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법관의 일반적인 인식 확인



- 사건처리 지연, 사건의 전문화·복잡다양화, 법관 인사패턴의 장기화 및 다양화 추세에서 기존의 사무분담 기간에 관한 법관의 일반적인 문제의식과 희망사항 등을 확인함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세부 내용에 관한 선호 및 보완점 검토
- 앞서 본 ‘3. 사무분담 장기화 기본원칙의 설정 및 시행방안’과 같이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24~25차 회의를 거쳐 사무분담 장기화의 구체적인 방침과 관련하여, 사무분담 기간 3년을 상한으로 하나의 근무 법원에서는 하나의 사무분담을 맡기로 하는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였음
- 이와 같이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기본원칙에 관하여 전체 법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유무, 전체적인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관한 선호도, 문제점 내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세밀하게 확인함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시행하는 경우의 단기적·중장기적 보완방안 및 부작용 완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

▣ 사법수요자 대상 설문조사의 목적

- 사무분담 장기화의 문제는 충실한 심리·신속한 재판·법관의 전문성 향상과 잦은 사무분담 변경을 지양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인 만큼 결국 사법수요자를 위한 것이기도 함. 따라서 사법수요자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인식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무분담 장기화 방침을 점검하는 토대로 삼기 위함임.

2) 조사의 설계 및 구성

▣ 법관 대상 설문조사

- 대상자: 전국 법관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법행정지원법관 등(이하 ‘법원장 등’)¹⁵⁾



■ 법원장 등 제외한 전체 법관(이하 ‘전체 법관’)

● 실시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실시기간: 2023. 3. 6.부터 2023. 3. 13.까지(8일간)

● 설문문항의 구성 및 내용

■ 구성: ‘법원장 등’과 ‘전체 법관’별로 설문조사 문항을 나누어 2트랙으로 실시

- ①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많은 양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법관의 인사 또는 사무분담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② 그중 핵심적 사항을 간추리고,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에 찬성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문항¹⁶⁾은 제외하는 것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함 ⇒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고자 함

- 이 경우 주요 문항만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로 인하여 전체 법관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값으로 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찬반 의견을 묻는 문항 등에 있어 제시된 보기(찬성 또는 반대) 외에도 ‘기타 의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답변을 구성¹⁷⁾하고, 사무분담 장기화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서술하는 문항을 각 설문문항의 마지막 항목으로 구성함

15) 사법정책분과위원회 25차 회의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각급 법원에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도 그 지위와 기능[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규칙 제2949-6호) 제4조 제3항, 제4항, 사무분담예규 제4조 제2항, 제3항]을 고려하여 ‘법원장 등’에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설문조사 실시기간인 2023. 3. 6.부터 2023. 3. 13.까지(8일간) 당시를 기준으로 각급 법원별 사무분담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장 등’에 포함하지 않음.

16) 별첨1 법원장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설문문항 중 ‘일반적인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찬성 이유’(설문문항 5-1), ‘민사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찬성 이유’(설문문항 10-1),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찬성 이유’(설문문항 12-1), ‘경력대등재판부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찬성 이유’(설문문항 14-1),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찬성 이유’(설문문항 16-1)에 해당함. 이 부분 각 설문문항은 별첨2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시하는 설문문항에서 제외함.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찬성, 반대 이유’(설문문항 16-1, 2)도 제외함.

17) 별첨2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각 설문문항 중 ‘설문조사 대상자 정보’(설문문항 1 내지 3)와 ‘부작용 완화 방안’(설문문항 14)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기타 의견’란을 제시하였음.



- 내용: 법원장 등에 대한 설문문항(별첨1 ‘법원장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조), 전체 법관에 대한 설문문항(별첨2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결과’ 참조)

■ 사법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 대상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
 - 구체적인 사건에서 일반국민을 대변하여 각종 재판의 소송대리인 및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목적을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음
- 실시방법: 이메일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실시기간: 2023. 4. 28.부터 2023. 5. 3.(6일간)
- 설문문항의 구성 및 내용
 - 구성: 사무분담 장기화의 필요성 및 범위 등에 관한 핵심내용으로만 구성된 5개의 문항
 - 내용: 별첨3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결과’ 참조

나. 설문조사 결과

1) 응답률

- 법원장 등 대상 설문조사: 전체 145명 중 55명 응답(응답률 37.9%)
-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전체 2,968명 중 800명 응답(응답률 26.95%)
- 사법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전체 28,021명 중 242명 응답(응답률 0.86%)

2) 문항별 결과

- 별첨1 ‘법원장 등 대상 설문조사결과’, ‘별첨2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결과’ 및 별첨3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결과’ 각 참조



다. 설문조사 내용의 분석

1) 법원장 등 대상 조사결과 검토

▣ 사무분담 장기화 및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

● <설문문항 4~5 사무분담 장기화 방향에 관한 일반적인 찬반>

- 사무분담 장기화 자체에 관하여는 찬성 또는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찬성 91.01%, 50명 / 반대 9.09% 5명)

● <설문문항 6~7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관한 찬반>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관하여는 상당수가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으나(65.45% 36명),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유의미한 수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34.54% 19명)
- 다만 사무분담 장기화 대상이나 기간과 관련하여,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으로 정한 것보다 오히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무분담 기간도 장기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눈에 띄어(설문문항 7 참조)

▣ 회생·파산 재판장 등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설문문항 8~12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장¹⁸⁾ 범위>

- 사무분담 장기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분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액단독재판부, 형사 영장전담재판부, 비송사건 재판부 등과 같이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서 정한 범위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나(52.72% 29명, 설문문항 8 참조), 회생·파산 재판장(29.09% 16명) 및 신청합의 재판장(16.36% 9명)의 경우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상

18) 경력대등재판부 재판장에 관한 부분은 후술함.



대적으로 높은 것이 눈에 띈

● <설문문항 21~23 지방법원 외 법원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찬반>

- 전문법원(찬성 25.45% 14명 / 반대 70.90% 37명, 설문문항 21 참조), 10인 이하 소규모지원(찬성 12.72% 7명 / 반대 85.45% 47명, 설문문항 22 참조) 및 고등법원 배석판사(찬성 36.36% 20명 / 반대 60% 33명, 설문문항 23 참조)의 경우 반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전문법원, 소규모지원 및 고등법원 배석판사¹⁹⁾에 관하여는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 논의 결과와도 궤를 같이함

■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장기화 하자는 수요가 있음**

● <설문문항 15~17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

-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하여는 다소 찬성하는 경향(찬성 67.27% 37명 / 반대 29.09% 16명)이 나타나는데,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기간은 2년을 선호함(81.81% 45명 / 3년 선호 3.63% 2명)
- 약 1/3에 해당하는 반대의견의 경우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다양한 사무분담을 통해 업무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재판장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93.75% 15명)이고, 그 외에도 재판장에 비해 배석판사의 변경으로 인한 재판지연의 우려가 크지 않다(65.50% 10명)거나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판부 변경의 기회가 필요하다(43.75% 7명)는 의견이 순서대로 나타남. 이는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1법원, 1사

19) 앞서 본 ‘3. 사무분담 장기화 기본원칙의 설정 및 시행방안’ 및 후술하는 ‘6. 사무분담예규 개정안 검토’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등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재판예규 제1714호) 제2조를 통해 고등법원 판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 가사, 행정 합의부의 경우에는 3년, 형사 합의부의 경우에는 2년을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등법원 배석판사에 관하여만 설문조사를 실시함.



무분담』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배석판사를 예외로 두면서 고려한 사항 및 예상하였던 반대사유와도 일치하는 것임(앞서 본 ‘3. 사무분담 장기화 기본원칙의 설정’ 중 ‘▣ 원칙에 대한 예외의 설정’ 부분 참조)

▣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확인됨

- <설문문항 9~10 민사재판장에 대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적용>
 - 민사재판장의 경우 충실한 심리·신속한 재판·법관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개선 효과(80% 32명) 및 민사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장기미제사건의 증가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77.50% 31명)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대체적으로 사무분담 장기화를 찬성하는 경향임(찬성 75.72% 40명 / 반대 25.45% 14명 반대)
 - 다만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 현행 사무분담 기간으로도 충실한 심리·신속한 재판 및 법관의 전문성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85.71% 12명)거나 민사사건 처리기간 장기화와 장기미제사건의 증가 문제는 대내외적인 사법 환경의 전체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판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85.71% 12명)는 의견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민사본안 재판장 보임 기회가 지나치게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50% 7명)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설문문항 11~12 형사재판장에 대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적용>
 - 형사재판장의 경우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50.90% 28명) 찬성 의견(47.27% 26명)과 약 3%의 근소한 차이만을 보임.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데 다소간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찬성하는 경우 민사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이상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76.92% 20명)는 것이 주된 이유이고 본안사건의 성격상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된다(50% 13명)는 의견도 다수 나타남



-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형사재판업무의 특성상 법관이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할 경우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 측면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85.71% 24명)는 것임. 개별 서술형 의견(아래 글상자 참조)으로 제시된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사실상 현실화되어 있는 형사재판 비선호 현상과 그로 인하여 법원장의 적정한 인사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력대등재판부의 사무분담 장기화를 반대하는 경우 구성원 간 갈등 발생 및 해소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경향**

- <설문문항 13~14 경력대등재판부에 대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적용>
 - 경력대등재판부의 경우 사무분담 장기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수(찬성 58.18% 32명 / 반대 38.18% 21명).
 -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합의부 재판장 및 단독재판장과 같은 비대등재판부 재판장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93.75% 30명).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비선호보직에 관하여 장기간 근무 여부에 관한 법관의 의사가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나(38.09% 8명)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재판부 변경의 기회가 자주 제공될 필요가 있다(61.90%, 13명)는 점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법원장 인사권의 적정·합리적 행사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에 관한 우려**

- 경력대등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데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 현 제도 하에 일선 법원에서 사무분담안을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함. 사무분담안을 확정하더라도 그와 같이 구성한 경력대등재판부에 있어 재판장과 주심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력대등재판부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거나 운영방식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향후 경력대등재판부의 구성을 확대하거나 특정 사무분담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무분담에 있어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특히 경력대등재판부의 사무분담 장기화는 그 전제로서 경력대등재판부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운영을 요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사무분담 장기화 방향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장애사유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 법관에 대한 인사는 행정처에서(전국 단위), 사무분담은 법원장이(각급 법원 단위) 각 실시하고, 각급 법원의 법원장 추천제까지 실시·확대되고 있으며 상당수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제한된 기간 내에 사무분담을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일선 법원에서 해당 법관의 전(前) 근무지 사무분담까지 고려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사무분담 장기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 확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실상 비선호보직의 존재 및 법관들 사이의 사무분담 형평을 고려하면, 현 제도 하에서 사무분담 장기화 또는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실현이 법원장 인사권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개별 서술형 의견 중에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의견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글상자 □와 같음

1. (장기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형사부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아무 보완책 없이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만을 장기화한다면 형사부 기피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임. 일선 법원장들의 인사권 행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설문문항 12-2의 서술형 의견)
2. 형사재판부 등 비선호 보직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보상책이 필요함(설문문항 20의 서술형 의견)
3. 경력대등재판부나 형사부 등 경합하지 않는 재판부의 경우 해당 재판부 구성원의 장기근무 희망의사를 적극 존중하였으면 좋겠다(설문문항 24의 서술형 의견)
4. 사무분담 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논의가 제기된 배경이 사건처리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건 적체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재판부부터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또한 비선호 사무분담을 맡게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선호 사무분담을 맡게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소의 손해가 있어야 하되, 구체적인 보상이나 손해는 각 법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함(설문문항 24의 서술형 의견)

2) 전체 법관 등 대상 조사결과 검토

▣ 사무분담 장기화의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현실적인 시행 및 구체화 방안에 있어서는 강한 우려가 있음이 확인됨

● <설문문항 4 사무분담 장기화 방향에 관한 일반적인 찬반>

- 사무분담 장기화 자체에 관하여는 찬성 또는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함(찬성 74.88% 592명 / 반대 25.12% 201명)

● <설문문항 5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관한 찬반>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관하여는 찬성의견이 상당수 확인되기는 하나 (40.75% 326명), 과반수가 반대(56.12% 449명) 의사를 표시하여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관한 찬성의견 비율과 일반적인 사무분담 장기화 방향에 관한 찬성의견 비율(설문문항 4 참조)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사무분담 장기화의 방향성 및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보완방안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보완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시행이나 구체화된 방침에 있어서는 우려하는 태도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민·형사재판부 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의견

● <설문문항 7~8 민사재판장에 대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적용>



- 민사재판장의 경우 사무분담 장기화에 찬성하는 의견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근소하게 높음(찬성 47.25% 378명 / 반대 51.12% 409명). 이는 법원장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민사재판장에 대하여는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향과는 달리 나타난 부분임.
 - 민사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민사사건 처리기간 장기화와 장기미제사건의 증가 문제는 대내외적인 사법 환경의 전체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판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77.26% 316명)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남
 - 민사본안 재판장 보임 기회가 지나치게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51.83% 212명)는 의견도 주된 이유 중 하나임
 - 한편, 전술하였듯이 법원장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 부분 설문문항의 답변으로 ‘현행 사무분담 기간으로도 충실한 심리·신속한 재판 및 법관의 전문성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85.71%)과 달리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위 의견에 투표한 비율은 33.25%에 그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이에 관하여는 ① 사무분담 장기화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법원장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실한 심리·신속한 재판·법관의 전문성 제고 등과 같은 재판의 적정성과 충실도에 연결된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개인의 업무 부담이나 법관들 사이의 사무분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분담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재판 지연 또는 장기미제사건의 증가 등의 현상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아래 글상자 □ 5. 참조)
- <설문문항 9 형사재판장에 대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적용>
 - 형사재판장의 경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반대(찬성 24.5% 196명 / 반대 73.25% 586명)
 - 주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형사재판 비선호 현상에 기인함



(94.70% 555명)

- 한편 전술하였듯 민사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민사본안 재판장 보임 기회가 지나치게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51.83% 212명)는 의견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이는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를 반대하는 이유에 있어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한 충실한 심리·신속한 재판에 대한 개선 효과가 민사재판에 비해 크지 않다’(32.25% 189명)거나 ‘법관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민사재판에 비해 크지 않다’(23.20% 136명)는 의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음 ⇒ 이러한 부분과 개별 서술형 의견을 포함한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선호 보직을 장기간 근무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업무부담 등의 우려나 사무분담의 형평에 있어서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비선호 보직을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담당하지 않는 것에 높은 비중을 두고 사무분담 장기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배석판사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우려

● <설문문항 15~17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

-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하여도 과반수가 반대함(찬성 41.25% 330명 / 반대 56.5% 452명).
- 형사·가사 재판부를 제외하거나 합의부의 실질적인 대등화를 전제로 또는 본인의 희망 내지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의사합치를 전제로만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를 허용하자는 개별 서술형 의견이 있었음
-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하여 찬성·반대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설문문항은 구성하지 않았는데, 해당 문항의 서술형 의견 및 전체 법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서술형 문항(별첨2 전체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문항 15 참조)의 답변을 종합하여 보면, 재판부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재판부의 정기적인 변경 외에는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함을 알 수 있음

■ 160개가 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됨

● <설문문항 3~13, 15 각 서술형 의견 부분>

- 사무분담 장기화의 문제는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에 편차가 큼
- 사무분담 장기화의 ① 대상·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② 시행 시기와 방법(단계별·법원별 시행 등), ③ 전제 조건(현실적 시행의 전제조건으로서 형사재판부에 대한 스마트워크 제도의 현실화, 서울 및 선호하는 수도권 근무지에서의 장기근무제도 도입, 전체적인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또는 경향교류 제도의 축소, 1심의 전면적인 단독화 등), ④ 부작용 완화방안(사무분담의 선호도와 업무 부담의 반비례를 전제로 하는 사무분담별 업무량의 균질화, 비선호 사무분담의 재판부 증설 등) 및 ⑤ 사무분담 기간을 3년보다 더욱더 장기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개개인의 의견이 천차만별임을 확인할 수 있음(이러한 서술형 의견들 중 일부 중 다수 제시된 의견을 추려 아래 글상자에서 □ 소개함)

1.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가 실현되려면 사무분담의 균질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로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법원행정처 또는 상급 법원에서 사무분담의 균질화를 위해 조정함을 강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 사무분담 장기화에 있어 형사재판부를 증설(이 경우 매년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가 법관에 대한 인사보다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재판부 증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어야 함)하는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고 부담이 커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발생하는 등의 고통이 있는 비선호 보직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음
3. 비선호 사무분담을 장기간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① 재판수당의 증액(차등 지급하는 방식 포함), ② 보상 및 인센티브(단일호봉제로 인해 급여의 차이를 들 수 없음을 고려하여 연공서열식 직무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비선호 사무분담·보직에 상위등급 부여,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사용가능 일수 확대 등),



- ③ 해당 사무분담을 장기간 담당한 법관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그 후의 사무분담에 있어서 우대(선호 사무분담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 경향교류에 있어 비선호 보직을 장기간 담당함을 전제로 한 지방근무 선호지역 고려, 경향교류 시 지방근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서울·수도권 근무기간을 다소 확대, 전입 시 전입 법원에서의 사무분담안에 대하여도 전출 법원에서의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할 경험을 고려 등)하는 등의 실질적인 보완이 없는 한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의 부작용만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봄
4. 사무분담 장기화가 현재의 재판 지연, 사건 적체, 장기미제사건의 증가 등의 현상을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즉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 한다고 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 미제사건 처리율 등이 비례하여 상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현행 사무분담 기간인 2년간 신속히 사무분담을 처리할 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 적체가 발생하는 면이 있어 동일 재판부에서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사건을 더 많이 처리하는 것도 아님. 사무분담 장기화는 해당 재판장 등 법관이 재판을 잘하고 있고 이를 계속할 경우 더 잘할 것임을 염두에 둔 것인데,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장기간 근무하면서 사건 적체를 야기할 수 있음
5. 사무분담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 종전에 재판·선고된 것과 동일·유사 사건이 법원에 계속 소 제기 되는 경우에 사실상 종전 사건과 동일한 결론을 계속적으로 답습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3) 사법수요자 대상 조사결과 검토

▣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높은 찬성률

● <설문문항 1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일반적인 찬반>

- 사무분담기간을 현행보다 장기화 하는 데 있어 매우 높은 비율의 찬성 의견이 확인됨(찬성 80.6%, 195명 / 반대 19.45%, 47명)

▣ 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하여 법관과 유사한 방향성

● <설문문항 2~3 민·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

- 민사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는 높은 비율로 찬성(찬성 71.1%, 712명 / 28.9%, 70명)하는 반면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는 찬성의견이 과



반수이나 민사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것보다는 찬성률이 낮음(찬성 54.1%, 131명 / 반대 45.95%, 111명). 민사재판장에 비하여 형사재판장에 대한 사무분담 장기화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법원장 등 포함 법관 대상 설문조사와 유사함

▣ 배석판사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높은 찬성률

● <설문문항 4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

- 배석판사에 관하여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찬성 의견(82.2%, 199명)이 확인되었음
-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하여 다소 반대하거나(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보다 필요성을 더 낮게 평가한(법원장 등 대상 설문조사) 법관들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음

4) 도출되는 시사점 - 법관 대상 설문조사 부분

▣ 법원장 등과 전체 법관 사이의 온도차

- 공통적으로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경향임
-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을 때에는, 법원장 등의 경우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극 찬성하면서 다만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반면 전체 법관의 경우 사무분담 장기화를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찬성하는 경우에도 형사재판장과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한편 우려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관하여는 법원장 등과 전체 법관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이 뚜렷하고, 사무분담 장기화 문제를 재판의 적정성과 충실도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선호 사무분담 및 보직에 대해 해당 법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의 과도한 누적, 근로의욕과 사기 저하 등의 측면에서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도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이해 및 관점의 차이

- 법원장 등의 경우 사무분담 장기화를 주로 ‘충실한 심리·신속한 재판·법관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함. ⇔ 반면 전체 법관 중에서는 재판의 지연, 사건 적체 및 장기미제사건의 증가 등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법관의 개별적인 서술형 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별첨2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설문문항 15 참조). 즉 사무분담 장기화의 문제는, ① 재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법관들의 의견보다는 법원 외부 사법수요자들의 의견에 비중을 두고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할 경우 법관이 속행사건 파악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법관 개인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의견 및 ② 법관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각급 법원 사무분담은 법관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데 다소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 등
- ⇒ 이와 같은 의견이 개별적으로도 제시되고 있는 점, 법원장 등이 아니더라도 전체 법관의 경우에도 적어도 사무분담 장기화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공감·찬성하거나 장기화에 따른 장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무분담 장기화 문제의 접근방식에 있어 사법서비스 및 사법수요자 측면에서의 요구라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고 집중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법관들의 이해 및 인식 개선을 구하는 과정이 함께



도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정이 병행되었을 때 지금보다 많은 법관들의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예상보다 원활하게 도모될 수 있음.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 24~26차 논의 과정에서도 사무분담 장기화 문제를 개별 법관의 이해관계 등의 차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법관의 사법서비스라는 관점을 토대로 선호·비선호 사무분담을 가리지 않고 담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한편 재직기간이 다소 긴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일부)인 경우 사무분담 장기화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재직기간 중 형사재판 담당비율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 반면 재직기간이 짧은 법관(재직기간 10년, 5년 미만 법관)은 반대 의견이 많고 형사재판 담당 경험이 있거나 클수록 반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법관들 사이의 사무분담 형평성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경험적인 측면과 신건 및 속행사건을 매회 파악하여 재판을 직접 진행하는 재판장 경험의 유무와 기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비선호 사무분담에 관한 법관의 장기간 근무의사 또는 희망 고려

- 법원장 등 설문조사 결과 및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 공통적으로 사무분담기간을 3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즉시 적용하기보다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 하자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었음. 즉 2년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법원이 동의(자원)하는 경우 1년 또는 2년을 연장하는 방안 등²⁰⁾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사무분담예규(재인 2003-4) 개정

20) 별첨2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문항 5, 10, 11의 서술형 의견, 별첨1 법원장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문항 13, 24 등 참조



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설정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1안), 형사재판부에 한하여 위 원칙을 변경하여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할 것인지(2안) 또는 형사재판부에 한하여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완화한 예외로서 2년간 형사재판부에 근무한 법관이 사무분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를 마련할 것인지(3안)를 두고 논의하였음. ⇒ 결과적으로 3안에 따라 2년간 형사재판부에 근무한 법관이 사무분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음[아래 ‘6. 사무분담예규 개정안 검토’ 중 나.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선언에 관한 예규 개정규정, 2) 개정안 초안의 ‘개정안’ 제4조 제4항 본문과 단서 제7호 참조]

▣ 우려되는 문제점 및 부작용을 보완·완화하는 실천적 방법의 필요성

- 비선호보직의 존재, 그로 인한 법관 사이의 형평성 저하, 현재의 인사 및 사무분담에 관한 제도 하에서 기존 사무분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²¹⁾ 및 재판부 구성원 간 갈등 해소의 어려움 등을 가장 우려함
- 특히 형사재판업무 비선호 현상과 관련하여 ① 비선호보직에 대한 합당한 보상(특별수당, 선호·비선호 사무분담 사이의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개별 법원 단위의 성과급 책정 시스템), ② 각 법원별 사무분담 균질화, ③ 형사재판장의 스마트워크제 동시 실시 등 사무분담 장기화 시행을 위한 각종 전제조건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 스펙트럼이 넓은 의견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감안하더라도, 제도의 도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시행함에 있어 그와 동시에 문제점 및 부작용을 완화하는 현실적·실천적인 방법이 병행될 것이 요구됨
-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검

21) 법관인사와 사무분담의 주체 등 분리, 전임 법관의 의사와 희망을 고려하기 어려운 결과 사실상의 불이익 발생 등 시스템적 문제점을 포함함.



또한 결과,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제시하는 방안 및 과제는 아래 ‘5. 사무분담 장기화 부작용 최소화 방안 검토’에서 상술함. 특히 단기적으로는 ①『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시행함에 있어 배석판사에 대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판부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추가적인 장애가 없도록 고려하고, ② 사무분담예규를 개정하여 사무분담안의 작성 및 확정 절차에 있어 전입 법원의 재판부 등의 종류와 수 및 공석을 고지하도록 하고, ③ 사무분담의 확정 전·후에 전입 법관을 포함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이의절차를 마련하였으며(개정안 제4조의 7 참조), ④ 사무분담에 있어 직전 사무분담을 반드시 고려하도록(개정안 제4조의 6 참조) 하는 방안을 마련함(아래 ‘6. 사무분담예규 개정안 검토’ 부분 참조)

5) 도출되는 시사점 - 사법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부분

■ 전반적으로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높은 수요

- 사법수요자로서 변호사들은『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주된 내용인 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 3년으로의 확대 등을 포함하여 현행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데 있어 법관들보다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응답자의 개별 의견(설문문항 5)을 통해 살펴보면, ① 사무분담 변경 시기에 발생하는 변론기일의 연기, ② 잦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재판 지연, ③ 심리주체와 판결 주체의 일치 필요성(특히 증거조사 절차에 참여한 법관에 의한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등을 이유로 현행보다 사무분담을 장기화 하는 방안이 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법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해당 사무분담을 장기화 하는 것이 재판지연의 문제를 줄이고 신속·적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법관과 사법수요자의 의견이 궤를 같이 하는 경향성

-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의견은 다소 엇갈리나, 민사재판장



의 경우 현행 사무분담기간보다 장기화하는 데 법관 및 사법수요자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함. 형사재판장의 경우도 법관에 비해 사법수요자가 사무분담 장기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민사재판장보다는 찬성률이 낮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는 모습을 보임

- 이와 같은 의견은 사법수요자가 사무분담 장기화를 주로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즉 형사재판에 비해 민사재판에 있어 재판지연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재판장의 변경뿐만 아니라 정기인사에 따라 1년마다 배석판사가 변경되어 재판부 구성 및 심리주체가 변경되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재판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설문문항 5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개별의견 중 민·형사 관련 15, 16, 100, 143, 149, 150 등 다수 / 배석판사 관련 3, 15, 17, 40, 74, 77, 109 등 다수)

■ 다양하고 모순되는 의견과 설문조사의 한계

- 위와 같은 전반적인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① 사무분담 장기화가 재판지연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인센티브 등에 의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개별의견 25, 28, 29, 67, 130, 159, 167 등), ② 사무분담 장기화가 사법수요자 입장에서 소송진행을 부당하게 또는 편향되게 한다고 느껴지는 재판장의 교체 기회를 제한하여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위 개별의견 중 4, 11, 20, 56, 85, 88, 110, 128, 140 등), ③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형사재판장에 한하여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고 민사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위 개별의견 99, 124, 155, 160, 180 등), ④ 민·형사별 또는 특수 분야의 전문법관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위 개별의견 32, 133, 162 등)과 같이 다양한 의견, 심지어 주된 경향성과 반대되는 의견까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내지 신속·적정·충실한 재판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는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개개인의 생각의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임
- 아울러 다소 낮은 응답률을 고려하면 설문조사 결과가 사법수요자의 의견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된 경향성과 그 기저에 있는 공통된 문제의식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마련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5. 사무분담 장기화 부작용 최소화 방안 검토

가. 『1 법원, 1 사무분담』 원칙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개관

1) 법관들 사이의 형평성 논란

- 현행 사무분담 체계가 가지는 법관들 사이의 형평 도모, 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분위기 쇄신, 전보인사로 인한 충격 완화 등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고, 장기간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사기가 저하되며, 법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무분담의 종류가 감소 ⇒ ‘법관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

2) 재판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조기 시정의 어려움

- 사무분담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장기간 갈등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

3) 법관들 사이 사무분담에 관한 갈등 증가

- 한번 사무분담이 결정되면 장기간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므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법관들 사이에 분쟁이나 결정된 사무분담에 관한 이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법원 구성원 사이의 단합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4) 단독부장 근무기간 증가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시행 시 부장판사가 민사, 가사 단독판사로 보임하는 경우의 단독판사 근무기간이 2년→3년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부장판사들의 단독부장 근무기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5) 업무처리가 부진한 재판장에 대한 견제수단 상실

- 불성실한 재판장이 장기간 해당 사무분담을 담당하게 되면 오히려 사건 처리가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같은 맥락에서 신입 재판장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 것이 신속한 사건처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음.
- 또한 사법수요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부당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재판장이 장기간 교체되지 않을 수 있음

나. 법관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극복 방안

1) 단기과제 : 관련 예규 개정 및 비선호재판부에 대한 업무상 배려

▣ 사무분담예규 개정안 마련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이 정착되면 한번 사무분담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무분담이 고정되므로, 장기간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한 법관은 다음 사무분담에서 비교적 선호되는 사무분담을 담당하거나 적어도 비선호 사무분담을 연속하여 담당하지는 않을 것을 기대함
- 따라서 법관들에게 사무분담을 확정할 때 직전 사무분담이 반드시 고려²²⁾되고, 사무분담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무분담에 대한 법관의 실질적인 이의절차가 보장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신뢰 부여를 위해서는 우선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율하는 사무분담예규에 위 내용들을 포함하는 개정안²³⁾을 마

22) 이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최초로 제안한 위원도 이를 전제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함.



련할 필요가 있음

- 전보인사 발표 후 증·폐부 및 사무분담에 관하여 동시에 논의하게 되면, 재판부별 업무량과 사무분담이 기존에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던 법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지적도 상당수 존재함. 즉 전입하는 법관들이 재판부 증·폐부와 사무분담을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임.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사무분담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영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²⁴⁾
 - 각급 법원에서 전보인사가 발표되기 전(12월~1월경)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재검토하여 수정 필요성을 검토함
 - 정기인사 전년도 통계에 기초하여 재판부별 업무량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정기인사에 적용할 재판부 증·폐부안²⁵⁾을 확정함
 - 전보인사 발표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된 증·폐부안을 토대로 해당 법원에 근무할 법관들에게 재판부의 종류와 수 및 공석사정을 공지하고, 사무분담희망원을 제출받음
 - 의견수렴절차(이의절차)를 거쳐 사무분담을 확정함
- 사무분담예규는 인사권자의 결단을 통하여 신속하게 개정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인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부나마 즉시 완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비선호재판부에 대한 업무상 배려

- 대표적인 비선호재판부인 형사재판부²⁶⁾에 대한 기피 요인은 여러 가지

23) 사무분담예규 개정안에 관하여는 아래 ‘6. 사무분담예규 개정안 검토’에서 상술함.

24)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사무분담에 관한 결정 전 각 재판부별 업무부담을 유사하게 설정할 수 있어 아래에서 장기과제로 논의하는 재판부별 업무부담 균질화도 도모할 수 있음

25) 가령 현원 유지 시, 1명 감원 시, 1명 증원 시 등으로 경우의 수를 나누어 증·폐부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전보인사 발표 전 각급 법원에 현원의 증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절차가 필요해 보임.



가 있으나 그중 하나는 스마트워크가 불가능하다는 점임. 특히 이로 인하여 지방권 법원에 보임하는 경향교류법관의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증가

- 2024년경 형사소송 전면전자화가 예정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나, 새로운 인사제도 실시와 동시에 발생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수도권에서 실시 중인 형사기록 전자화 시범실시(스캔) 등 조치를 일시적으로 지방권 법원에 확대 → 기록 전자화를 통해 스마트워크 신청 가능
 -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부를 담당하는 법관에게 일부라도 전자약식 사건 또는 전자화된 사건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위 법관들에게 스마트워크 신청을 허용 → 전자사건을 일부라도 담당하는 법관은 스마트워크 신청 가능
 - 스마트워크 신청 시 지방권에서 근무하는 형사재판부 담당 법관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스마트워크 가능 일수를 증대 → 형사재판부에 대한 간접적인 배려

2) 중기과제 : 비선호 사무분담 담당 법관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

▣ 직무성과급 체계 개편

- 법관 업무 자체의 내재적 만족도나 사명감만을 강조하고 외재적인 보상을 도외시하면 법관들의 동기 부여가 어려움(사법수요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의견이 개진됨)
- 직무성과급 체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전보인사는 대법원장에게, 각급 법원에서의 사무분담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현행 인사체계 하에서는 사무분담과 전보인

26) 홍보람, “법관 업무분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제185면 이하에 따르면, 법관의 형사 사무분담 선호율은 4.1%에 불과함.



사(근무지, 근무기간)가 유기적으로 연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새로운 인사제도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임

- 현재 형사재판부 근무법관 등 일부 보직에 대하여 직무성과금 지급 시 추가 금원(때 반기별로 상이하나 20~50만 원 정도)이 배정되고 있으나,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임
-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비선호 사무분담 담당 법관의 직무성과금 등급 조정 또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 있음
- 현재 직무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법원행정처 산하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담당²⁷⁾하고 있으므로, 위 위원회에서 비선호 재판부에 관한 직무등급 조정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 비선호 재판부와 선호 재판부 사이에 직무성과금에 현저한 차등을 두되 구체적인 차등의 비율은 각급 법원의 사정을 고려하며 법원장, 지원장 또는 사무분담위원회 등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설문조사 응답²⁸⁾도 참고할 만함

■ 직후 사무분담에서의 배려

- 각급 법원에서 직전에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한 법관들에게 선호 사무분담에 관한 우선보임권을 부여²⁹⁾하거나, 희망에 따라 비선호 사무분담에서 배제되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무분담 기본원칙 개정³⁰⁾도 고려 가능(다만

27)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90호) 제7조 내지 제9조

28) 별첨1 법원장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18면. 사무분담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운영위원회나 전체 판사회의에서 정하는 방법도 가능함.

29) 서울회생법원은 민사합의부가 비선호 사무분담인 점을 고려하여, 사무분담 기본원칙 제4조 제2항에 '민사합의부의 재판장은 다음 사무분담 시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무분담 희망의 최우선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에서 민사합의부 배석판사들에 관하여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30) 대전지방법원 사무분담 기본원칙 제6조 제4항은, '우리 법원에서 직전 연도에 형사부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우 당해 연도 사무분담을 정할 때 우선적으로 형사 이외의 재판부에 배치하도록 고려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권고안 마련 등을 통한 조율이 필요해 보임)

- 같은 측면에서 직전에 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한 법관들을 비선호 사무분담에 우선 보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설문조사 결과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한 기간 등을 전보인사에서 고려(임지, 지방권 근무기간 등)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함.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수도권 임지에서 비선호 사무분담을 장기간 담당할 것을 희망하면서, 향후 지방권 근무 시 선호 임지에 대한 우선보임권을 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무한 비선호 사무분담의 종류, 담당한 기간, 근무한 법원, 처리한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계량화 하여 차등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³¹⁾
 - 또한 현재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분야(특허, 행정, 가정, 회생 등)는 대체로 선호 사무분담으로 분류되는데, 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전보인사에서 상대적인 불이익³²⁾을 주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의 퇴직요인이 증가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함
 - 이 문제는 현 시점에서 확정하기보다는 법관의 인사주기 또는 전보인사제도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와 연동하여 장기 연구과제로 분류함이 타당함

■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한 사실을 평정에 반영

- 형사재판 등 다른 사무분담에 비하여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평정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할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비선호 사무분담 담당 판사에 대한 예우

- 비선호 사무분담을 장기간 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것

31)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3년간 근무한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형사단독재판장으로 근무한 법관 사이의 우열을 정하기 쉽지 않음.

32) 비선호 사무분담에 근무한 법관들에게 임지 선택의 우선권 또는 지방권 근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주게 됨.



도 비선호 사무분담 담당의 유인이 될 수 있음

- 3년차 형사재판장에 대한 차량 제공 등 구체적인 예우 방안은 예산 문제를 수반하므로 중기적 과제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3) 장기과제 : 재판부별 업무부담의 균질화를 위한 노력

■ 개관

- 비선호 재판부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더불어 각 재판부별 업무난이도와 업무량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됨. 사무분담의 종류에 따라 각 재판업무가 갖는 업무의 특수성은 변경되기 어려우므로, 업무량을 최대한 균등하게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함

■ 적극적인 재판부별 업무량 조정

- 각급 법원에서 증·폐부, 겸임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선호 사무분담에는 추가 업무량을 부여³³⁾하고 비선호 사무분담의 업무는 경감하는 등 재판부간 업무부담 편차를 조정³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각급 법원에서 조율이 어렵다면 법원행정처나 상급법원에서 대략의 기준을 설정하여 준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사무분담 확정절차의 개선

- 정기인사 발표 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 증·폐부안을 먼저 확정하는 방향으로 사무분담절차를 개선하면, 기존에 각급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들³⁵⁾이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재판부 증·폐부와 관련된 의견을 교

33) 홍보람(주 26) 제188면 이하에 의하면, 해당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한 법관의 약 45%가 ‘담당을 희망하는 분야의 사건 수가 120% 증가하더라도 이를 감내할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함.

34) 잦은 변론기일과 증인신문의 부담, 전자기록화의 지연, 심리적, 육체적 부담 등으로 비선호 사무분담으로 분류되는 형사재판부를 증부(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사안이라는 하나 형사재판부의 1심 사물관할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음)하여 각 재판부별 접수량을 감소시켜 재판부담을 줄이고, 각급 법원별로 비교적 선호 사무분담으로 분류되는 재판부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35) 특히 정기인사에서 전보인사의 대상이 되는 법관들은 더 이상 해당법원의 사무분담과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각자 담당하였던 사무분담의 업무부담 등에 관하여 균형잡힌 시각에서 접근할 여지가 큼.



환하고 합리적인 검토안을 도출함으로써 재판부별 업무부담의 균질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전담재판부 폐지안 검토

- 재판부별 업무 균질화를 위해 전문법관을 제외한 전담재판부³⁶⁾를 폐지하는 방안³⁷⁾도 고려 가능함. 그러나 전담재판부는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비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

4) 토론 : 형사전문법관 제도 도입 고려

- 형사재판부가 비선호 사무분담임이 명백하고 설문조사 결과 형사전문법관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들도 존재하므로,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꾸준히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음
-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사무분담 장기화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장기 연구과제로 분류함이 타당함

다. 그 밖에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

1) 재판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조기 시정의 어려움

-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서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는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경력대등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부에서는 위와 같은 우려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6) 가령 형사재판부의 경우 증인신문이나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교통, 마약전담 등이 비교적 선호 사무분담으로, 부패, 경제전담 등이 비교적 비선호 사무분담으로 분류되므로, 형사재판부 사이에서도 전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

37) 사무분담 장기화 연구반 사무분담 장기화 보고서(2016년 8월)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법관이 특정 사무분담을 맡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수되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General Jurisdiction). 물론 이 경우에도 법률상 존치하여야 하는 전담재판부는 유지가 필요함(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등).



- 사무분담예규 제4조 제4항은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경력대등재판부 구성원은 일반적인 형태의 합의부보다는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력대등재판부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 법관들 사이 사무분담에 관한 갈등 증가

- 법관들 사이의 사무분담에 관한 갈등은 결국 재판부 사이의 업무가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함. 따라서 사무분담 장기화제도가 정착되면서 장기적으로 각 재판부 사이의 업무량, 난이도 등이 유사하게 설정되면 갈등의 요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보직을 확정하며,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³⁸⁾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전보인사 발표 전 재판부 증·폐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별 업무량을 유사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사무분담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구성원간 갈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3) 단독부장 근무기간 증가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시행으로 단독부장 근무기간의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나, 이러한 현상은 민사, 가사단독 관할 확대에 의한 합의부장 보직 숫자가 감소로 인한 요인이 더 크므로, 단독부장기간 증가가 사무분담 장기화의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합의부장으로 보임하는 것이 반드시 선호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단독부장 근무기간 증가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8) 또는 기존과 같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주도적으로 사무분담을 정하는 방법도 구성원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



4) 업무처리가 부진한 재판장에 대한 견제수단 상실

- 이는 현행 인사체계 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법원장(지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적절한 업무 소통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예규 개정안 제4조 제4항 제8호에 의하여 사무분담변경하는 방법이 있음

6. 사무분담예규 개정안 검토

가.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따른 예규 개정 방향 검토

1) 현행 사무분담예규 중 관련 부분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
 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
- ③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정과 관련하여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장인 법관: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
 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⑥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제4항 제1호의 기간을 그보다 장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때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6 (재판부 배치 시 고려사항)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타 법원에서 한 사무분담을 포함한다)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 배치 등의 사무분담을 정한다.

2) 예규 개정 시 고려할 내용 개관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이 원활하게 정착되려면 법관들 사이의 형평 및 공정한 사무분담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① 종전 법원에서 담당하였던 사무분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② 근무할 법원의 사무분담 결정에 대한 참여 및 법관의 이의절차 실질화 필요

■ 종전 사무분담에 대한 고려

-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 안건을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 회부할 때 대전제가 되었던 내용임
- 현행 사무분담내규에 관련 규정으로 제4조의6이 존재하나, 법관들에게 반드시 직전 사무분담이 고려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문언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

■ 사무분담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실질화

- 사무분담이 한번 결정되면 장기간 고정되므로, 사무분담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처리 및 법관들의 절차적 이익 보장 측면에서 이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무분담에 관한 이의절차에 대한 근거는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46호, 이하 ‘판사회의규칙’이라고 함)에만 존재하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5조(직능)

① 판사회의³⁹⁾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 판사회의규칙은 사무분담 확정 후 판사의 이익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사무분담 확정 전에 법관이 사무분담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사무분담위원회를 둔 각급 법원에서는 대체로⁴⁰⁾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분담안을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사무분담안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사무분담예규에 반영하여 사무분담의 대상이 되는 법관들에게 실질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무분담에 대한 이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2. 12. 5.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고, 현재 각급 법원에서 위 의결사항에 따라 내규 개정을 검토 중임

1. 각급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내규에 사무분담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및 이의사항을 수집,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 각급 법원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내규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39)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판사회의규칙 제3조 제1항

40) 춘천, 제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 내규에 「법원장은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을 확정하기 전에 사무분담위원회가 작성한 제4조 제2호의 사무분담안을 공개하고 ○○지방법원 판사 전체(전입 예정 법관 포함)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내규로 ‘사무분담에 관한 의견이 있는 법관은 사무분담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



나.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선언에 관한 예규 개정규정 검토

1) 예규 개정에 관한 분과위원회 논의 사항

▣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에 관한 규정 신설과 개정안에의 반영 방법

- 사무분담예규 제4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만을 개정하는 것이 간명하기는 하나, 다만 향후 부장판사 또는 판사의 인사패턴, 주기가 현행과 달라지는 경우 추가 개정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새로이 선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함
-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적용이 제외되는 재판부들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개정안 본문에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선언하고, 단서로 예외가 되는 각 호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

▣ 적용 제외의 범위

● 형사재판부

-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형사재판부 근무기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함
- 또한 앞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각 재판부별 업무부담을 균질화하더라도 형사재판 특유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현존함. 이로 인하여 법관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저하되면,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법관들의 업무효율 증대라는 사무분담 장기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형사재판부에도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적용하되, 형사재판부에 2년 이상 근무한 법관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무분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함이 적정함⁴¹⁾

41) 분과위원회 논의에서,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사법수요자(변호사)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민사재판부 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 비율보다 형사재판부 재판장의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형사재판부 재판장에 대한 사무분담 장기화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사무분담 장기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 전문법원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법원(가정, 행정, 회생⁴²)은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고등법원

- 각 고등법원은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재판예규 제1714호, 이하 ‘고등법원 운영지침’이라고 함)에 따라 현재 민사 및 행정재판부에서는 최소 3년, 형사재판부에서는 최소 2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인사패턴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고등법원에 일률적으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관철하면 고등법원 형사재판부 재판장(경력대등재판부 포함)의 근무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고등법원 운영지침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함. 기존의 고등법원 인사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분담 기본원칙에서 고등법원도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지원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규모 지원의 경우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는 아래 2)항 개정안의 제4조 제4항 제8호가 정한 ‘분

가능하다는 점, 형사사건의 특성상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민사사건보다 크지 않다는 점, 고등법원 형사재판부의 경우에도 최소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형사재판부 재판장으로 3년을 근무하도록 정하면 법관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형사재판부 재판장의 경우 사무분담 장기화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과 같이 2년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상당하였음. 그러나 외국 법원에 비하여 우리 법원이 정기적인 전보인사 및 잦은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하여 재판부 변경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 사실심 충실화·법관 전문화·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 사무분담 장기화 필요성의 측면에서 형사재판이 민사재판 등 다른 재판보다 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4년 사무분담 예규 개정 후 약 9년 만에 최소 사무분담기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새로운 원칙을 확정·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원칙을 그대로 관철함이 타당하다는 점, ‘2년 간 형사재판부에 근무하는 법관이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를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예외로 설정하여 둠으로써 건강, 육아 등 해당 법관에게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재판부 재판장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점, 오히려 형사재판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형사재판부에 2년 이상 근무를 원하는 법관의 경우 특별한 부담 없이 3년간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

42) 대체로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담당하지 않으나, 본안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는 민사합의재판부가 있으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할 필요



답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예외사유에 포섭 가능하므로 이를 별도의 예외사유로 정할 필요는 없음

▣ **종전 사무분담예규 조문 정비**

- 위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면 체계상 사무분담예규 제4조 제5항, 제6항도 함께 개정 필요

2) 개정안 초안⁴³⁾

<종전 규정>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장인 법관: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
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⑥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제4항 제1호의 기간을 그보다 장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때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43) 신, 구조문 대비표는 별지 참조. 이하 항목에서도 같음.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해당 법관의 법원 및 지원 근무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장 : 최소 근무기간 1년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 최소 근무기간 1년

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 해당 기간(이 호는 제1·2 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장기근무법관

5. 고등법원 근무 법관

6.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근무 법관

7. 2년간 형사재판부에 근무한 법관이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⁴⁴⁾

8.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4항 본문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⑥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확정함에 있어 사무분담 기간을 그보다 장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때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종전 사무분담을 고려하는 내용의 예규 개정규정 검토

1) 예규 개정에 관한 분과위원회 논의 사항

■ 개정안예의 반영 방법

- 종전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무분담예규에 보다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여 예규 준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직전 사무분

44) 원칙은 3년으로 하되, 분과위원회 토의 내용대로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 신청에 따라 사무분담 변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담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새로운 항을 제정

▣ 직전 사무분담의 고려 정도

- 직전 사무분담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문제됨. 1법원, 1사무분담원칙이 정착되는 경우 법관별로 사무분담 변경주기가 늘어나게 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무분담의 종류는 이에 반비례하여 적어지게 됨
- 모든 직급을 기준으로 적어도 3종류의 직전 사무분담을 고려할 수 있는 ‘6년’ 정도가 적절해 보임

경험 가능한 사무분담의 수	3년	4년	5년	6년
지법부장, 평판사(단독) ⁴⁵⁾	1~3개 ⁴⁶⁾	2~4개	2~5개	3 ⁴⁷⁾ ~6개
고법판사 ⁴⁸⁾	1~2개	2개	2개~3개	3~4개
평판사(배석)	2 ⁴⁹⁾ ~3개	2~4개	3~5개	3~6개

2) 개정안 초안

<종전 규정>

제4조의6 (재판부 배치 시 고려사항)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타 법원에서 한 사무분담을 포함한다)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 배치 등의 사무분담을 정한다.

45) 업무 수행 도중 배석기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배석판사로 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경험할 수 있는 사무분담이 위 표 기재 수치에서 +1~2가 될 것으로 예상함.

46) 이 수치의 최대값은 매년 1년 단위 보직(영장, 소액, 고정 등)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함. 이하 같음

47) 부장판사의 근무패턴상 본인이 근무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 이상 1개의 법원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지방권 3년, 경인권 2, 서울권 2~3년), 6년의 근무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3개의 법원에 근무하게 되고, 최소 3개의 사무분담을 경험하게 됨. 근무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근무패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법관 본인이 연장근무를 희망하고 이를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의 수급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허가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48)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함. 고등법원 운영지침에 따라 민사 및 행정은 3년, 형사는 2년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함.

49) 종종 동일한 합의부에 유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수치의 최소값은 2년당 1개의 사무분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정함.



<개정안>

제4조의6 (재판부 배치 시 고려사항)

-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 배치 등의 사무분담을 정한다.
- ②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할 때에는 법관의 직전 6년간의 사무분담(타 법원에서 한 사무분담을 포함한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사무분담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실질화에 관한 예규 개정규정 검토

1) 예규 개정에 관한 분과위원회 논의 사항

▣ **현행 사무분담 확정절차 개관⁵⁰⁾**

- 전보인사 발령 → 사무분담위원회 소집 →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현원 증감에 따라 재판부 증·폐부안과 사무분담안을 동시에 심의 → 사무분담위원회가 제시하는 초안 공람 → 법관들의 의견 수렴(사무분담 예규에는 근거가 없는 비공식 절차) → 필요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 소집 및 논의 → 법원장 등의 사무분담 확정 및 발표 → 전보인사에 따른 부임 → 전채판사회의에서 정기인사 사무분담에 관한 개요 설명

▣ **사무분담에 확정 전 의견개진 절차의 필요성과 의견 제출의 방식**

-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사회의는 사무분담에 관하여 특정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할 권한을 가지나,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판사회의를 개최할 무렵에는 이미 각 법관의 업무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그 상태에서 확정된 사무분담을 변경하기 어려워 법관의 이의절차가 사실상 형해화됨
- 현재 사무분담에 관한 이의절차를 들지 여부는 각급 법원의 내규에 맡겨져 있음 ⇒ 상위규정인 사무분담예규에 사무분담 확정 전 법관들이

50) 법원별로 절차가 상이하나 대략의 흐름은 아래와 같음.



사무분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 현재 각급 법원에서 사무분담에 관하여 해당 법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대체로 ① 사무분담안(초안)을 공개하고, ②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후, ③ 법관의 개별적인 이의를 사무분담위원회 등⁵¹⁾이 수집한 다음 이를 반영(이하 ‘개별이의방식’이라고 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무분담에 관한 법관의 이의를 수용하여 사무분담안을 변경할 경우 인사 업무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다른 법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별이의방식에 따라 이의를 받아들여 사무분담안이 변경되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법관이 새로이 변경된 사무분담안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이의절차를 마련할 때 사무분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회의 등을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듣는 방식(이하 ‘공개이의방식’이라고 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그러나 공개이의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채택하기 다소 어려움
 - 공개이의방식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법관들을 소집하여 공개적인 공간⁵²⁾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됨. 이러한 방식은, ① 이의를 하는 법관이 해당 사무분담을 담당할 수 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정(건강, 사생활 등) 등을 공개된 공간에서 진술하여야만 하는 부담을 줄 수 있고, ② 이의를 하는 법관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며, ③ 이의를 하는 법관의 직급, 기수, 나이 등 위계에 따라 사무분담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④ 공개적으로 이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관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이의절차를 보장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함

51)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법원은 사법행정지원법관 등

52) 오프라인 방식의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 어느 쪽을 취하든 사무분담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법관들 사이에는 사실상의 대면절차를 거치게 됨.



- 개별이의방식의 실무례에 의하더라도, 특정 법관의 이의에 따라 사무분담안 변경을 고려할 때 이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다른 법관의 의견을 수집하여 사무분담위원회 등에서 양측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면 족함
- 절차에 관하여 개별이의방식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각급 법원에서 내규 등으로 마련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 2023년 상반기에 각급 법원에서 내규 개정절차가 진행 중임
- 한편 현재 전보인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약 2주 전 인사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의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인사 발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⁵³⁾.

▣ 사무분담 확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 전입 예정인 법관들을 하여금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참석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음⁵⁴⁾. 따라서 전입 예정인 법관들이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전체판사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함
-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급 법원에서 전보인사 발표 전 재판부별 증·폐부안을 확정된 다음, 정기인사 발표와 동시에 확정된 증·폐부안을 기초로 해당 법원에 근무가 예정된 법관들에게 공석사정을 고지하고, 숙고할 기회를 준 후 사무분담희망원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면 적어도 전입 예정인 법관들에게 업무부담이 큰 재판부를 배정할 것이라는 우려는 감소할 수 있음
- 법원의 규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 없이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여 토론

53) 특히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된 법원은 각 사무분담위원들의 업무,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하여 사무분담에 관한 회의를 열어 충분한 토의 및 적절한 결정을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함.

54) 대체로 사무분담위원은 해당 법원의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되므로 전입법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는 없고, 설령 전입법관들 사이에 사무분담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선출할 위원의 수, 전입 법관들 사이의 직급별, 사무분담별 대표성 안배 문제 등 여러 난점이 있음.



을 거쳐 사무분담을 확정하는 법원들이 존재함(주로 10인 내외의 소규모 지원). 이 경우에도 전입법관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 개정안에의 반영 방법

- 기존 사무분담예규 조항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위 내용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분과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이의절차와 사무분담 확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항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함
- 현행 판사회의규칙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분담 확정 후 이의절차에 관한 내용도 사무분담예규에 포함함

2) 개정안 초안

<종전 규정>

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

-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
 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중략)
- ③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정과 관련하여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

-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한다.
-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위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
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중략)
- ③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정과 관련하여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7(사무분담 확정의 절차)

-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무분담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법관들에게 해당 법원의 재판부 종류와 수⁵⁵⁾ 및 공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 법관들로부터 사무분담 희망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무분담을 확정하기 전 해당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법관들에게 사무분담안을 공개⁵⁶⁾하고, 위 법관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확정된 사무분담에 대하여 해당 법관은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판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5) 각급 법원에서 정기인사 발표 전 증·폐부안을 확정하지 못하였다면 정기인사 발표 직후 해당 법원 근무 예정인 법관들에게 재판부의 종류와 수에 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이 규정을 통해 각급 법원에서 정기인사발령 전 증·폐부안을 확정할 것을 사실상 강제함.

56)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된 법원과 그렇지 않은 법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구체적인 절차는 각급법원에서 사무분담 기본원칙이나 내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둠.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사무분담의 확정)</p> <p>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재판장인 법관: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p> <p>2.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p> <p>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4조(사무분담의 확정)</p> <p>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u>해당 법관의 법원 및 지원 근무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을 상한으로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장 : 최소 근무기간 1년</u></p> <p>2. <u>재판장이 아닌 법관: 최소 근무기간 1년</u></p> <p>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4. <u>장기근무법관</u></p>



	<p>5. <u>고등법원 근무 법관</u></p> <p>6. <u>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근무 법관</u></p> <p>7. <u>2년간 형사재판부에 근무한 법관이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u></p> <p>8. <u>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 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u></p>
<p>⑤ <u>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u></p>	<p>⑤ <u>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4항 본문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u></p>
<p>⑥ <u>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제4항 제1호의 기간을 그보다 장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때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u></p>	<p>⑥ <u>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확정함에 있어 사무분담 기간을 그보다 장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때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u></p>



	<p>경유하여야 한다).</p>
<p>제4조의6 (재판부 배치 시 고려사항)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타 법원에서 한 사무분담을 포함한다)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 배치 등의 사무분담을 정한다.</p>	<p>제4조의6 (재판부 배치 시 고려사항)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삭제>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 배치 등의 사무분담을 정한다. ②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할 때에는 법관의 직전 6년간의 사무분담(타 법원에서 한 사무분담을 포함한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p>
	<p><신설> 제4조의7(사무분담 확정의 절차)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무분담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법관들</p>



	<p>에게 해당 법원의 재판부 종류와 수 및 공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 법관들로부터 사무분담 희망원을 제출받아야 한다.</p> <p>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무분담을 확정하기 전 해당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법관들에게 사무분담안을 공개하고, 위 법관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확정된 사무분담에 대하여 해당 법관은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판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	---